

[가맹본부의 로고]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090100577]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09.12.14]

www. onentwo.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4.10.21.]

대표 이메일 주소

: thecof@nate.com

[한앤둘치킨]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더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더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로3번길 34]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877-883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986-560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부, 1877-883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0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8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6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더콕	한앤돌치킨 외 2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로3번길 34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 6.15	2006. 7.14	장 미 립	1877-8834	031-986-5609
	법인등록번호	124411-0078247	사업자등록번호	137-81-75840	

[2009. 9. 24 주식회사 원산푸드에서 주식회사 더콕으로 상호 변경]

2.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간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자 (대표이사)	장 미 립	한앤돌치킨 외 2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로3번길 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 미 립	1877-8834	031-986-560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사)	민 철 기	한앤돌치킨 외 2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로3번길 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 미 립	1877-8834	031-986-5609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사)	민 지 연	한앤돌치킨 외 2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로3번길 34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 미 립	1877-8834	031-986-5609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한앤돌치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앤돌치킨	
상 호	한앤돌치킨 00 점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89491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반올림,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15,525	357,205	458,319	638,233	-4,801	-6,598
2022년	850,121	376,185	473,935	1,018,462	2,395	15,615
2023년	847,551	368,364	479,186	987,203	-44,343	-5,251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1]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미림	대표이사	2017. 12. 18 ~ 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민철기	이사	2012. 1. 1 ~ 현재	이 사	회사 내부관리 총괄
	민지연	이사	2014.10.20. ~ 현재	이사	가맹점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2

※비상근 임원은 비급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인원 총4명중 상근임원이 2명 포함되어 있어 직원 수는 2명입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더콕	가맹사업 경영	2017. 1. 10~현재	꼬꼬봉투통닭(등록번호: 20170049)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더콕	가맹사업 경영	2022.1.1.~현재	츄릅(choorooop)(등록번호: 20214289)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한앤들치킨 (서비스표권)	영업표지 및 제품 사용	2008. 8. 22 출원 2009. 9. 2 등록	출원번호 41-2008-0022786 등록번호 41-0189491-0000	민 철 기	2029. 9. 2 (2009.9.2 ~2029.9.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표 등록의 변천

1. 2009년 09월 02일 민철기로서 최초 등록
2. 2019년 08월 30일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하여 존속기간만료일이 2029년 09월 02일로 연장.

II. 가맹본부의 [한앤들치킨]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9년 9월 24일
(직영점을 시작한날:2013년5월28일)

2. [한앤들치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더콕	한앤둘치킨	민병국	2009. 9. 24 ~ 2011.12.31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135
(주)더콕	한앤둘치킨	장미림	2012. 1. 1 ~ 2017. 3. 7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135
(주)더콕	한앤둘치킨	민철기	2017. 3. 8 ~ 2017.12.17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135
(주)더콕	한앤둘치킨	장미림	2017.12.18. ~ 현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

3. [한앤둘치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한앤둘치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후라이드치킨, 양념치킨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앤둘치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1	31	0	30	30	0	29	29	0
서울	12	12	0	9	9	0	9	9	0
부산	0	0	0	1	1	0	1	1	0
대구	0	0	0	0	0	0	1	1	0
인천	2	2	0	1	1	0	4	4	0
광주	1	1	0	0	0	0	0	0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12	12	0	15	15	0	12	12	0
강원	1	1	0	1	1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1	1	0	2	2	0	0	0	0
전남	1	1	0	0	0	0	1	1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한앤둘치킨]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를 확인 하십시오. 당사는 2018년도에 오픈한 해외가맹점(미국 달라스점, 베트남 미딩점, 베트남 나쁘랑점)은 숫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한앤둘치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3	3	5	0	0	31
2022	31	9	9	1	0	30
2023	30	5	6	0	1	29

※ [한앤들치킨]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를 확인 하십시오. 당사는 2018년도에 오픈한 해외가맹점(미국 달라스점,베트남 미딩점, 베트남 나트랑점)은 숫자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6. [한앤들치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한앤들치킨]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더콕	꼬꼬봉투통닭	20170049	치킨	4/0	1/0	1/0
가맹본부	(주)더콕	쥬릅 (choorooop)	20214289	기타외식	해당없음	6/0	2/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앤들치킨]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표에 따른 추정 평균매출액을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면 아니 됩니다.

(단위: 천원, 절삭, 부가세 별도)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2023년 연평균 추정 매출액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추정 매출액		연간 평균 추정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추정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 체	29	157,311	6,106	961,294	27,466	24,139	928	21
서울	9	314,217	6,921	961,294	27,466	61,693	1,234	5
부산	1	해당없음	-	-	-	-	-	1
대구	1	해당없음	-	-	-	-	-	0
인천	4	해당없음	-	-	-	-	-	2
광주	0	해당없음	-	-	-	-	-	0
대전	1	해당없음	-	-	-	-	-	1
울산	0	해당없음	-	-	-	-	-	0
세종	0	해당없음	-	-	-	-	-	0
경기	12	112.767	5.879	238.908	17.991	24,139	928	11

강원	0	해당없음	-	-	-	-	-	0
충북	0	해당없음	-	-	-	-	-	0
충남	0	해당없음	-	-	-	-	-	0
전북	0	해당없음	-	-	-	-	-	1
전남	1	해당없음	-	-	-	-	-	0
경북	0	해당없음	-	-	-	-	-	0
경남	0	해당없음	-	-	-	-	-	0
제주	0	해당없음	-	-	-	-	-	0

* 상기 자료는 pos상의 매출액과 부가세신고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 6개월(180일)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인 가맹점 4곳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매출확인이 어려운 가맹점 3곳과 면적확인이 어려운 1곳은 산출제외 되었습니다.

*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29개가 아닌 실제 21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추정매출액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지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의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점포의 위치,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절대 유념하여야 합니다.

8. [한앤둘치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앤둘치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9	1,93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한앤둘치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사용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를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에는 한앤돌치킨과 꼬꼬봉투통닭, 츄릅(choorooop)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포함)		(비공개)	49,167			

*위 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고촌지점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0	031-985-5414~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험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더콕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앤돌치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미 반환	소멸성 비용	
교육비	3,300	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교육 미실시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잔존 채무,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	위약금,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0,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66평방미터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67,211]	[3,361]		
필수설비(정착물: 기계 및 장비, 소모품등,의탁자)	협력업체	23,100	1,155	설치 1일 이전	주류냉동·냉장고, 가스공사,외부타트, 철거 등 제외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인테리어 지정업체	35,200	1,760	공사전50%, 중도 금30%, 완료20%	
	간판(협력업체)	4,950	약248	설치1일전	
초도물품 등 비용	당 사	1,760	88	물품 공급 1일 이전	별지1 참고
홍보비	협력업체(미정) 점주자율	2,200	110		
금융 비용	-	1주일 경과마다 약 [38] 추가부담		-	직접 지불하는 비용 아님, 기업 대출금리 5% 적용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하의 점포가 개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까지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2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24시간 경과 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30%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 가맹점 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대상금액의 50%

*상기 표에 따른 위약금 이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귀하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당사가 상권분석과 관련하여 입지 선정 조언→가맹희망자 입지 선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의사 결정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1. 가맹점을 영위하기 위한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 2.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등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한앤둘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가맹금 분할 납부 : 당사는 가맹금 분할 납부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광고비+간판]				
교육훈련비	당사	220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 실시	보수교육비	교육 필요시 지급
광고분담금	당사, 광고업체	아래 참조	광고계약에 따름	광고 미 실시	소멸성 비용	-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당사 또는 인테리어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2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VII-1. 참조 (간판은 극동광고)
지연이자	당사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간 경과 후 익일부턴 부담
로열티	당사	330	매월 5일	해지시 잔여일로 산정하여 반환	기간경과시	-

※1 가맹점 모집을 전국 단위의 광고는 본사 부담,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는 본사가 50% 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이 50%부담하고,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는 본사가 60% 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이 40%부담합니다.

※2. 노후시설 보수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영업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031-986-5608)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031-986-5608)
제품 및 상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및 상품의 보관상태, 신선도 유지 상태 등 점검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031-986-5608)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	타사제품 취급, 운영매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훈련 등 점검	매월 1회	문의: 가맹사업부 (031-986-5608)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추가 교육비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	당사 또는 인테리어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협 의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아래※ 참조)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	-----	------------------------------	------------------

※2. 노후시설 보수 시 가맹점사업자가 보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가맹계약이 종료·해지·영업양도할 경우 36개월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미상각잔액을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한앤들치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가맹비,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2).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서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종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부담할 급부의 이행지체 시 지체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벌을 부과합니다.
-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시스템,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하고,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고,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통 등에 표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손해배상 외 부담할 급부의 이행지체 시 지체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200,000원의 위약벌을 부과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는 당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한앤둘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2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앤둘치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단위:천원,절삭,부가세포함)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한앤들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단위:천원, 절삭,부가세 포함)	비고
	해당없음				

- 2) 당사가 [한앤들치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후라이드치킨(뼈/순살) 양념치킨(뼈/순살) , 불닭치킨(뼈/순살) 간장치킨(뼈/순살), 반반치킨(뼈/순살) 마늘치킨(뼈/순살), 치즈뿌치(뼈/순살) 후라이드고블린(뼈/순살) 치링치링화이트치킨(뼈/순살) 사천블랙치킨(뼈/순살) 진사천블랙치킨(뼈/순살) 진로치킨떡볶이(순살) 후라이드레드고블린(뼈/순살) 순살과닭치킨 달콤강정(순살) 매콤강정(순살) 오븐구이 오리지널(뼈/순살) 오븐구이 매운맛(뼈/순살) 오븐구이 바비큐맛(뼈/순살) 베이크치킨(뼈/순살) 고블린치킨(뼈/순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상품공급의 제한 및 중단의 조치 2.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조치 3. 동일한 위반을 2회 이상 반복하면 시정조치 없이 계약 해지	

로스트 사천블랙(뼈/순살) 로스트 진사천블랙(뼈/순살) 레드고블린(뼈/순살) 치킨골뱅이, 왕새우튀김, 모듬포테이토 모듬소시지, 골뱅이소면, 아이스황도 있닭발, 없닭발, 오돌뼈, 모래집볶음 우삼겹해물짬뽕, 홍합짬뽕탕 간사이오뎡탕, 해물누룽지탕, 번데기탕 노가리땅콩, 대구포땅콩, 한치땅콩 먹태땅콩, 양념먹태 화이트치즈볼, 국물떡볶이, 진-로제떡볶이, 양념감자, 빅치즈스틱 페스츄리소세지, 오다리튀김, 치즈스틱 뼈삭통집튀김, 소떡소떡, 통오징어튀김, 통문어튀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후라이드치킨(뼈/순살)	18,900 (순살 1,000원 추가)	안내공문 발송	2024. 4월 기준
양념치킨(뼈/순살)	19,900 (순살 1,000원 추가)	"	
불닭치킨(뼈/순살)	19,900 (순살 1,000원 추가)	"	
간장치킨(뼈/순살)	19,900 (순살 1,000원 추가)	"	
반반치킨	19,900 (순살 1,000원 추가)	"	
마늘치킨(뼈/순살)	20,900 (순살 1,000원 추가)	"	
치즈뿌치(뼈/순살)	19,000 (순살 1,000원 추가)	"	

후라이드고블린(뼈/순살)	21,900 (순살 1,000원 추가)	"
치링치링 화이트치킨(뼈/순살)	20,000 (순살 1,000원 추가)	"
사천블랙치킨(뼈/순살)	20,900 (순살 1,000원 추가)	"
진사천블랙치킨(뼈/순살)	22,900 (순살 1,000원 추가)	"
진로치킨떡볶이(순살)	22,900	"
후라이드레드고블린(뼈,순살)	22,900(순살 1,000원 추가)	"
오븐구이 오리지널(뼈/순살)	18,900 (순살 3,000원 추가)	"
오븐구이 매운맛(뼈/순살)	19,900 (순살 3,000원 추가)	"
오븐구이 바비큐맛(뼈/순살)	19,900 (순살 3,000원 추가)	"
고블린치킨(뼈/순살)	21,900 (순살 3,000원 추가)	"
로스트 사천블랙(뼈/순살)	20,900 (순살 3,000원 추가)	"
로스트 진사천블랙(뼈/순살)	22,900 (순살 3,000원 추가)	"
레드고블린(뼈/순살)	22,900 (순살 3,000원 추가)	"
순살파닭	21,900	"
달콤강정	20,900	"
매콤강정	21,900	"
치킨골뱅이	26,000	"
왕새우튀김	16,000	"
모듬포테이토	14,000	"
모듬소시지	16,000	"
골뱅이소면	17,000	"
아이스황도	11,000	"
있닭발	16,000	"
없닭발	16,000	"
오돌뼈	16,000	"
모래집볶음	16,000	"
우삼겹해물짬뽕	18,000	"
홍합짬뽕	16,000	"
간사이오뎡탕	16,000	"
해물누룽지탕	16,000	"
노가리땅콩	12,000	"
대구포땅콩	12,000	"
한치땅콩	12,000	"
먹태땅콩	15,000	"
양념먹태	15,000	"
화이트치즈볼	5,500	"
국물떡볶이	5,000	"
진-로제떡볶이	9,500	"
양념감자	4,400	"
빅치즈스틱	3,500	"
치즈스틱	5,500	"
페스츄리소세지	4,400	"
오다리튀김	5,500	"
왕새우튀김(플러스메뉴)	5,500	"
빠삭뽕집튀김	9,500	"
파인샤베트	6,000	"
소떡소떡	3,500	"

통오징어튀김	13,500	〃	
통문어튀김	13,5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한앤둘 치킨 꼬꼬봉투통닭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단, 특수상권의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봅니다)	가맹계약서에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당사는 영업지역의 설정기준을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별 매장에 대한 영업지역은 설정기준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후 계약

서에 별첨을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특수상권이란, 역세권(각 출구), 아파트(1,000세대)단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종합병원, 대학가, 놀이공원, 극장, 푸드코트,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으로 구분하는 지역을 의미하여, 별도의 상권으로 정하고, 해당 별도의 상권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인근 가맹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구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앤둘치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한앤둘치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한앤둘치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초 계약 종료 후 갱신·연장하는 기간도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9조 제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 [한앤둘치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조 제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9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약정해지, 합의해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유예기간 없이 해지하는 즉시해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해지 사유

< 귀하가 당사에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귀하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한앤둘치킨』 가맹사업시스템의 명성이나 신뢰가 훼손되어 귀하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에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1회 이상 당사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약정해지 할 경우>

약정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조 제2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3)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7조의 가맹금 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8조의 대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8)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3조 제1항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1년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9)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존의 영업표지를 계속 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10)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11)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12) 귀하가 제24조 위반하여 당사와 약정한 광고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4조 제1항
13) 귀하가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관측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관측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5항의 교육을 연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34조 제1항
1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1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28조 제1항의 필수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하는 장비와 다른 사양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17)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18) 귀하가 가맹계약서 당사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19)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1항
20) 당사가 당사와 귀하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변경·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21) 귀하가 가맹점운영관리규정 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슈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22)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최초 개점 예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0일 이내에 개점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 제1항
23)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마케팅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POS자료의 수시 열람, 취득을 방해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24) 귀하가 기타 신의칙에 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25) 귀하가 가맹점운영관리규정 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슈퍼바이저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26) 귀하의 가맹점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34조 제1항
27) 귀하가 고객들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	제34조 제1항

되는 경우	
28)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제34조 제1항
29) 귀하의 손해배상, 위약금, 물품대금 등의 채무액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34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2) 합의해지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서 제35조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토지수용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당사와 귀하는 계약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

* 가맹계약서 제34조 제5항에 의해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귀하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해지서를 작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즉시해지 사유

< 당사가 귀하에게 통지 없이 가맹계약을 즉시해지 할 경우 >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위 즉시해지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본 계약서 제46조 제1항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제6조 제3항
2. 계약의 갱신 시	제6조 제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동의를 하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수정사유에 의하지 못할 경우, 계약갱신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사업부(031-986-560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가맹비, 교육비, 오픈지원경비(오픈 시 인력지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반환함),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진므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위탁행위는 불가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상속 승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 및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 및 겸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한앤돌치킨 이외의 영업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해지 및 종료 후 2년 이내에 기존의 영업지역(동일장소)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한앤돌치킨과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귀하의 영업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치킨, 맥주를 판매하는 업종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한앤돌치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4:00 ~ 익일 02:00 (본사와 협의 조정 가능)	주 5일 이상 월22일 이상 개점 하여야 하고, 당사의 사전 승 인 없이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문의: 가맹사업부 (031-986-5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1회/1개월	본사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사업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개월	본사 가맹사업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2개월	본사 가맹사업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한앤돌치킨] 가맹점 모집을 전국 단위의 광고는 본사 부담,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는 본사 50% 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이 50% 부담하고, 브랜드홍보 및 상품광고 + 가맹점모집광고는 본사 60% 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가맹점이 40% 부담하며, 기타 지역 광고의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홍 보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50% 중 1/가맹점사 업자(n)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제시받은 금액납입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홍 보 및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60%	40% 중 1/가맹점사 업자(n)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가맹점사업자가 임의 시행: 가맹점사업자 전액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는 50%이상, 판촉은 70%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당사는 전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판촉비) 부담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촉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는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귀하의 부담으로 해당 영업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광고 또는 선전은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가맹계약서 제2조에 따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 즉, 한앤둘치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 및 메뉴개발, 고객분석, 영업방법(접객), 종업원 교육 및 훈련,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홍보, 광고 등의 내용으로써 “한앤둘치킨 시스템”을 말하며,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시 가맹계약서 제37조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가 계약위반에 따라 부담할 급부의 이행지체 시 위약별로 이행지체일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지체일당 금이십만원(200,000원)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8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사양(제조원/판매원 등)의 필수품목 이외에 품목을 구입/사용하거나 지정된 메뉴 이외의 메뉴를 판매할 경우[냉장고 보관 시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함]

적발 즉시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정 전까지 적발 익일부터 위약금으로 하루 당 금이십만원(200,000원)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7]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72,16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11,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조리시설 및 주방집기 설치 등	D-24~5(20일)	59,4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6~4(총12시간)	
최초상품공급	- 초도물품 공급	D-1(1일)	1,76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이하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라 함)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 부터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기타 관련절차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름	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판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자문과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및 내 용	절 차	비 용 부 담	비 고
경영 지도	가. 개업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지도 및 원조 나. 설비 및 장비의 설치, 그것의 개선이나 운전에 관한 지도업무 다.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원조 라. 조리 및 식자재 관리, 재고관리업무에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또는 인력파견 통지(경영지도 내용, 기간, 인력과 견 현황, 소요비용	가맹본부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가맹본부의 필요 시 또는

관한 지도 마. 상품 판매소구점을 창출하는 방법과 신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바. 해당 지역의 점포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전략 및 전술지도 사.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결과 제시 또는 인력 파견 결정	또는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한앤둘치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시 교육	회사 소개 조리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한앤돌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개업 시 교육	12시간	3,300(예치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4시간	22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는 가맹점 운영의 전문성 및 동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의 교육방침에 따른 기초 교육 및 훈련을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맹점의 개점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자는 귀하의 점포관리자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2. 가맹점리스트

별첨3.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필수품목 리스트

별지2. 주요공급 품목의 상위50% 공급가격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031-986-560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

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onetwo.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가맹점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가맹금 예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1.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및 필수품목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2. 주요공급 품목의 상위 50% 공급가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